

'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2026. 9.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원 산 지 검 증 과

CONTENTS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1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1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2
다. 검증요청 사유	2
라. 주요 검증요청 품목	3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4
가. 한-튀르키예 FTA	4
나. 한-EU FTA	5
다. 한-중국 FTA	6
라. 한-아세안 FTA	7
마. 한-인도 CEPA	7
바. 기타 FTA (한-영국, 한-베트남 등)	8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8
III.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	10



['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 본 자료의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내용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에 한정된 정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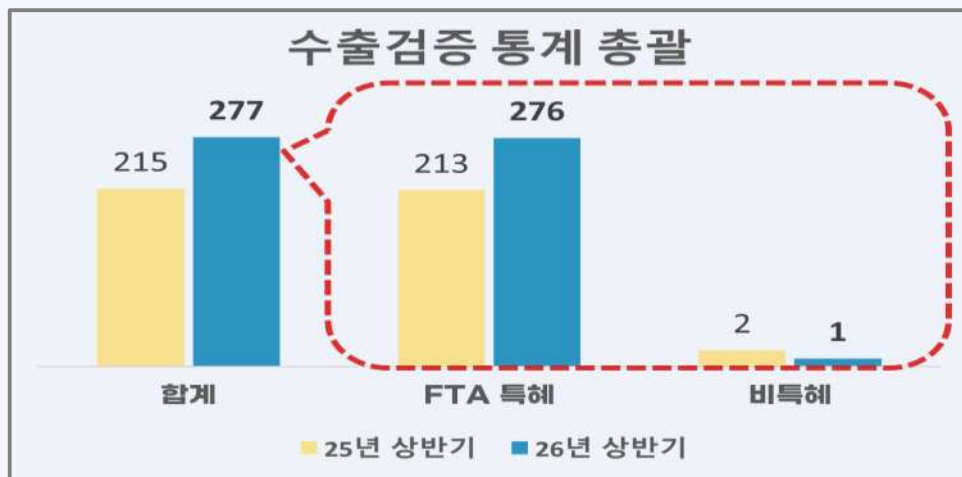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 2026년 상반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총 277건으로 전년 동기 215건보다 28.8% 증가했습니다.

전체 검증요청	FTA 검증요청	비특혜 검증요청
277건	276건	1건
전년 동기 대비 +28.8%	전년 동기 대비 +29.6%	전년 동기 대비 -50.0%

(단위: 업체수)



- **[FTA 검증]** 2026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9.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튀르키예·중국·인도로 부터의 검증 요청이 2026년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 **[비특혜 검증]** 2026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비특혜 검증요청 건수는 전년 동기 2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23년	'24년	'25년	'25. 1~6월	'26. 1~6월	전년 대비
FTA 특혜 등	튀르키예	198	338	340	166	215	29.5%
	EU	68	71	45	31	31	0%
	중국	12	12	11	7	17	142.9%
	아세안	16	13	9	4	3	▲ 25.0%
	인도	18	14	9	2	7	250.0%
	기타	6	15	7	5	3	▲ 40.0%
비특혜		5	10	3	2	1	▲ 50.0%
합 계		323	473	424	215	277	28.8%

- **[FTA 검증]** 2026년 상반기 FTA 원산지검증은 한-튀르키예 / 한-EU / 한-중국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검증 요청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중국 및 인도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국가의 검증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다 검증요청 사유



주요 검증요청 사유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
■ C/O 오류 및 유효성 의심 ■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 **[요청사유]** 2026년 상반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이유로 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각 FTA 특성에 따라 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증 대응 시 「표.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검증요청 품목

- **[요청품목]** 섬유류 205건(74.0%), 화학공업제품 24건(8.7%), 기계류 16건(5.8%)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3개 품목군이 전체 277건의 88.4%를 차지했습니다.

검증품목	집계건수	비중
섬유류	205건	74.0%
화학공업제품	24건	8.7%
기계류	16건	5.8%
전자전기제품	9건	3.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건	3.2%
철강금속제품	7건	2.5%
생활용품	3건	1.1%
농림수산물	2건	0.7%
잡제품	2건	0.7%
합계	277건	100.0%

- **[품목별 특징]** 섬유류 205건 중 한-튀르키예 요청이 197건으로 96.1%를 차지했습니다. 한-EU는 전자전기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이 각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가 한-튀르키예 FTA



- **[현황]** 2026년도 기준, 발효된 협정 중 한-튀르키예 FTA에 따른 수출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요청건수 중 약 77.6% 차지)
- **[품목]** 섬유류(직물 등)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등) > 기계류(펌프 등)
- **[요청사유]** 튀르키예 당국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역외산 직물의 원상태 재수출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

→ 한-튀르키예 FTA 규정상 면직물 제품은 '역내산 실'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수출업체 A社は 중국산 직물을 국내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 됨

○ [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

- ✓ 튀르키예로부터 대부분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수입산 직물을 국내 가공없이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섬유류 수출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와 실제 생산·가공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원재료 구매자료와 생산·가공 기록 등도 함께 확보·보관하기기 바랍니다.



나 한-EU FTA

- **[현황]** 2026년 상반기에 요청은 31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으며, 독일 6건, 덴마크 5건 등 14개 회원국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요청건수 중 약 11.2% 차지)
- **[품목]** 전자기기(이차전지 등) > 화학공업제품(화장품 등) > 섬유류(편·직물 등)
- **[요청사유]**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①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②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부적정 원산지신고서 발행

- 인증수출자인 B社は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 불가리아에 섬유류를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C社は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 되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원산지 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 [EU 수출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출물품이 인증받은 품목에 포함되는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증범위를 벗어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작성한 신고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오류를 발견하면 세관에 문의하여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중국 FTA

- **[현황]** 2026년 상반기 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42.9% 증가하였습니다.(7건 → 17건)
- **[품목]**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등) > 기계류(펌프 등)
- **[요청사유]** 중국 관세당국은 ① 협정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② 원산지증명서와 중국 수입신고서 내역 간 품목분류 불일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정확한 HS세번 검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수출업체 D社は 수출물품(지방산 혼합물)의 성분·특성·용도에 따른 정확한 HS세번과 다른 HS세번으로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 **[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

- ✓ 화학제품은 상품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분·조성·용도와 혼합물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HS세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국에서 다른 HS세번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세번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HS세번 오류를 발견하면 세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수출신고 정정 및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 바랍니다.



라 한-아세안 FTA

- **[현황]** 2026년 상반기 아세안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총 3건으로 전년 동기 4건보다 25%감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만 요청이 왔습니다.
- **[품목]** 섬유류 · 철강금속제품 · 플라스틱제품 각 1건
- **[요청사유]** 아세안 회원국은 ①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또는 ②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세안 수출 시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운송서류의 품명, 수량, 송장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국 송장이 사용되는 거래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송장 발행자 정보가 정확한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마 한-인도 CEPA

- **[현황]** 2026년 상반기 인도 당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동기 2건보다 250% 증가했습니다.
- **[품목]** 플라스틱제품 · 전자전기제품 · 기계류 각 1건
- **[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
 - ✓ 인도 당국은 ‘조합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FTA (한-영국, 한-베트남)

- **[현황]** 상위 5개 협정 외에는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 관련하여 각 1건씩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품목]** 섬유류(가방) · 플라스틱제품 · 철강금속제품
- **[요청사유]**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출 시 유의사항]**
 - ✓ 같은 국가와 복수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거래라도 실제 적용한 협정의 원산지기준과 증명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한-베트남 FTA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 **[현황]** 2026년 상반기에는 튀르키예로부터만 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이 1건 왔습니다.
- **[품목]** 철강금속제품 (중후판*)
 - * 선박·건설 등에 쓰이는 두꺼운 철강판
- **[요청사유]**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 **[수출 시 유의사항]**
 - ✓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기준 및 증명서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비특혜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원재료와 생산공정에 근거하여 적용 기준별 판단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규정 발취]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Ⅲ.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



대미 수출물품의 원산지 점검 결과 공유



- **[배경]** 미국의 원산지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대미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험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미 FTA 규정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대부분 수출업체가 적정하게 한-미 FT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수출자의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사례]** 주요 위반 사례 유형



중국산 식물·편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날염 공정 후 미국에 수출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염색 등 공정을 수행했지만, 중국산 반제품과 완제품의 6단위 세번이 동일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 불충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위반

○ **[미국 수출 시 유의사항]**

- ✓ 2026년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는 세번(HS 6단위)이 변경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생산공정, 세번변경 여부 및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물품이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